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담당 : 김선희 간사 010-4945-1108 hugh@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날 짜 2016. 11. 5. (총 1 쪽)

보 도 자 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1.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2.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3.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